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후단 중 “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증을”을 “다만,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(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4항 후단 중 “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”을 “다만,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 또는 사유서(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서면을”을 “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) ① ~ ④ (생략)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문 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	제8조(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(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</u> -----.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0조(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	제20조(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</u>	----- ----- -----다만,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 또는 사유서(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-----.
⑤·⑥ (생략) 제34조(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) ① (생략) ② 법 제25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<u>서면</u>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 제34조(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수거래과	
연 락 처	044-200-4438